



시 보



시보는 공문서의
효력을 갖는다.

제1709호 2025. 9. 22. (월)

고시 · 공고

- 「목포시 도시계획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2
- 대산1~3지구 지적재조사사업 경계결정통지 반송에 따른 공시송달 공고 6
- 「목포시 의료·요양 등 지역 돌봄의 통합지원에 관한 조례」제정(안) 입법예고 14
- 「목포시 고향사랑 기부금 모금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24
- 「목포시 아이스팩 수거 및 재사용 등의 활성화 지원 조례」폐지(안) 입법예고 31

회람							
----	--	--	--	--	--	--	--

발행 : 목포시 편집 : 홍보과 ☎ 061-270-8539

목포시 도시계획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문

「목포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를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미리 알려 시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5년 9월 22일

목 포 시 장

1. 조 례 명 : 목포시 도시계획 조례

2. 개정이유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이하 “국토계획법 시행령”이라 함) 개정 (2025. 7. 1.)으로 “성장관리계획구역의 지정 또는 변경 절차”를 진행함에 있어 지자체 도시계획조례로 위임된 사항을 신설(개정)하고자 함.

3. 주요내용

☐ 국토계획법 시행령 개정 사항 반영[1건]

- 성장관리계획구역을 지정·변경하려는 경우, 재공고·재열람을 하여야 하는 중요한 사항을 마련(안 제26조의4)

4. 개정 조례안 : 붙임

5. 신·구조문 대비표 : 붙임

6. 관계 법령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같은 법 시행령

7. 관련부서 의견

- 부패영향분석평가 대상여부(감사실) : 원안동의
- 성별영향분석평가 대상여부(여성가족과) : 원안동의

8. 예산 상황 : 별도 예산조치 불필요

9. 입법예고 기간 : 2025. 9. 22. ~ 10. 13.(20일간)

10. 사전협의(승인) 사항 : 해당 없음

11. 기타 참고사항 : 해당 없음

12. 의견제출

○ 이 조례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2025. 10. 13.까지 목포시장(도시디자인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법인 및 단체의 경우는 그 명칭과 대표자), 주소, 연락처

다. 제출방법 : 우편, 팩스(061-270-3589), 직접방문 등

※ 보내실 곳 : 우)58613, 목포시 양을로 203(용당동) 목포시청(도시디자인과)

13. 기타사항

○ 기타 자세한 사항은 목포시청 홈페이지(<http://www.mokpo.go.kr>) 입법예고란을 참조하시거나 목포시청 도시디자인과(전화 : 061-270-8625, FAX : 061-270-3589)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목포시 도시계획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목포시 도시계획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장에 제26조의4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26조의4 (성장관리계획구역의 지정 또는 변경 절차) 영 제70조의13제5항에 따라 성장관리계획구역을 지정 또는 변경하려는 경우로서 “도시·군계획조례로 정하는 중요한 사항”이란 영 제70조의13제7항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가 아닌 경우를 말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일반적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른 처분, 절차, 그 밖의 행위는 이 조례에 따라 행하여진 것으로 본다.

신·구조문 대비표(본문)

현 행	개 정 안
<u>제26조의4 <신 설></u>	<u>제26조의4(성장관리계획구역의 지정 또는 변경 절차) 영 제70조의13제5항에 따라 성장관리계획구역을 지정 또는 변경하려는 경우로서 “도시·군계획조례로 정하는 중요한 사항” 이란 영 제70조의13제7항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 가 아닌 경우를 말한다.</u>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서

□ 조 례 명 : 목포시 도시계획조례 일부개정안

○ 성명(단체명) : (서명 또는 인)

○ 주 소 :

○ 전 화 번 호 :

조례(안) 항목별 내용	찬성여부		의견(사유)	기타 참고사항
	찬성	반대		

공 시 송 달 공 고

「지적재조사에 관한 특별법」 제16조제6항에 따라 “대산1~3지구 경계결정 통지”를 위하여 토지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에게 우편물을 발송하였으나, 폐문부재·수취인불명 등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2025년 9월 22일

목 포 시 장

1. 공고대상 : 187명 (붙임참조)
2. 공고기간 : 2025. 9. 22. ~ 2025. 10. 6. (14일간)
3. 공고장소 : 목포시 시보, 전국 시·군·구 게시판 및 인터넷 홈페이지
4. 공고내용 : 목포시 대산1~3지구 경계결정 통지
5. 기타사항

가. 공고기간 동안 연락이 없는 경우 「행정절차법」 제15조제3항에 따라 본 서류는 본인에게 송달된 것으로 간주됨을 알려드리며, 「지적재조사에 관한 특별법」 제18조제1항에 따라 목포시 경계결정위원회에서 의결된 경계로 경계가 확정됨을 알려드립니다.

나. 기타 궁금하신 사항은 목포시청 민원봉사실 지적재조사팀(☎061-270-8118)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붙임 1. 공시송달조서 1부.
2. 경계결정 이의신청서 1부. 끝.

[붙임 1] 공시송달 조서

대산 1 ~ 3 지구 경계결정 통지 공시송달 조서

번호	토지소재지			면적(㎡)			토지소유자		반송사유
	법정동	지번	지목	종전	경계결정	증·감	성명	주소	
1	산정동	1008-33	전	93.0	93.0	0.0	고곤덕	전라남도 목포시 용당동 947-86	미발송(주소불명)
2	대성동	184-52	도로	6.0	0.0	-6.0	최인담	전라남도 목포시 대성동 184-9	미발송(주소불명)
3	대성동	186-9	대	126.0	124.0	-2.0	최장수		미발송(주소불명)
4	대성동	190-12	대	84.0	84.0	0.0	김범술	전라남도 목포시 대성동 190-12	미발송(주소불명)
5	대성동	193-30	대	56.0	45.8	-10.2	송광섭	전라남도 목포시 대성동 193-30	미발송(주소불명)
6	산정동	74-40	대	89.0	0.0	-89.0	김정숙	제주특별자치도 서귀포시 위미리 3159	미발송(주소불명)
7	산정동	74-59	대	13.0	13.0	0.0	정성화	경기도 용인시 수지읍 330-4신한아파트 307호	미발송(주소불명)
	산정동	78-181	대	10.0	10.0	0.0			
	대성동	32-1	대	13.0	13.0	0.0			
8	대성동	28-36	대	149.0	138.8	-10.2	소덕윤	경기도 평택시 안정리 36	미발송(주소불명)
9	대성동	31-4	대	83.0	83.0	0.0	김정웅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매탄동 176주공1단지아파트35동 403호	미발송(주소불명)
10	산정동	74-72	대	99.0	117.3	18.3	김다현	전라남도 목포시 산정동 86-20	미발송(주소불명)
	산정동	86-20	대	60.0	60.0	0.0			
	산정동	86-21	대	10.0	6.8	-3.2			
11	산정동	81-4	대	20.0	20.0	0.0	김기석	86	미발송(주소불명)
	산정동	81-6	대	23.0	23.0	0.0			
	산정동	81-12	도로	11.0	11.0	0.0			
	산정동	81-13	도로	9.0	9.0	0.0			
12	산정동	81-4	대	20.0	20.0	0.0	주순임	78	미발송(주소불명)
	산정동	81-6	대	23.0	23.0	0.0			
	산정동	81-12	도로	11.0	11.0	0.0			
	산정동	81-13	도로	9.0	9.0	0.0			
13	산정동	83-4	도로	117.0	72.4	-44.6	김도선	78	미발송(주소불명)
	산정동	83-5	대	103.0	103.0	0.0			
	산정동	83-6	대	94.0	94.0	0.0			
14	호남동	379	도로	169.0	169.0	0.0	김상두	창평동 7	미발송(주소불명)
15	산정동	169-22	대	93.0	93.0	0.0	김술	전라남도 신안군 압해읍 회룡길 51-9	반송불능(수취인불명)
	산정동	169-23	대	33.0	74.8	41.8			
	산정동	169-24	대	93.0	117.0	24.6			
16	산정동	169-25	대	89.0	98.1	9.1	송상훈	부산광역시 영도구 웃서발로83번길 11, 403호	반송불능(폐문부재)
17	산정동	169-37	대	102.0	102.0	0.0	김춘기	경기도 과천시 부림동 41, 주공아파트807동 408호	반송불능(이사불명)
18	산정동	170-1	대	119.0	87.0	-32.0	최미단	전라남도 목포시 마파지로40번길 14-3,	반송불능(폐문부재)
	산정동	170-12	대	175.0	201.9	26.9			
	산정동	170-17	대	26.0	26.0	0.0			
19	산정동	170-2	대	86.0	98.8	12.8	이동수	전라남도 목포시 마파지로40번길 10-1	반송불능(폐문부재)
20	산정동	170-6	대	96.0	96.0	0.0	천영순	전라남도 목포시 산대로 92-2 (산정동)	반송불능(폐문부재)
21	산정동	170-14	대	205.0	117.6	-87.4	이순식	전라남도 목포시 평화로83번길 16, 102동 1604호 (산정동)	반송불능(폐문부재)
22	산정동	170-18	대	40.0	219.6	-20.4	김길호	전라남도 목포시 원산중앙로 87, 315동 101호 (연산동, 연산주공3단지4단지아파트)	반송불능(폐문부재)
	산정동	170-22	대	50.0	41.1	-8.9			
23	산정동	170-28	대	143.0	143.0	0.0	정수연	무안군 무안읍 창포로24, 석호가람위아파트 103-902	반송불능(폐문부재)
24	산정동	171-5	대	165.0	155.4	-9.6	박석철	전라남도 목포시 마파지로40번길 11 (산정동)	반송불능(폐문부재)
25	산정동	171-6	대	247.0	247.0	0.0	김소정	전라남도 목포시 양을로 42, 111동 1502호	반송불능(폐문부재)
26	산정동	1008-9	전	76.0	133.8	57.8	하동애	광주광역시 서구 백석길 19, 102동 706호	반송불능(폐문부재)
	산정동	1008-19	대	106.0	157.6	51.6			
27	산정동	1008-13	대	96.0	96.0	0.0	김복남	전라남도 목포시 마파지로 70-4 (산정동)	반송불능(폐문부재)
28	산정동	1008-20	대	169.0	149.4	-19.6	박선희	서울특별시 송파구 법원로 55, c-1505호 (문정동, 송파아이파크)	반송불능(폐문부재)
29	산정동	1008-21	대	93.0	113.1	20.1	김정웅	전라남도 목포시 쇠나루길 98, 102호 (상동)	반송불능(폐문부재)
30	산정동	1008-26	대	33.0	38.2	5.2	정팔월	전라남도 목포시 원산중앙로 87, 315동 705호 (연산동, 연산주공3단지4단지아파트)	반송불능(수취인불명)
	대성동	193-26	대	13.0	13.0	13.0			

31	대성동	16-9	도로	21.0	21.0	0.0	김영애	전라남도 해남군 해남읍 명문길 9, 백두아파트 403호 (백두2차아파트)	반송불능(수취인불명)
32	대성동	18-7	대	149.0	173.1	24.1	김혜숙	전라남도 목포시 마파지로40번길 10 (대성동)	반송불능(때문부재)
33	대성동	18-14	대	99.0	126.2	27.2	한용주	전라남도 목포시 산대로 92-3, 전라남도 목포시 산대로 92-3 (대성동)	반송불능(이사불명)
34	대성동	18-18	대	17.0	17.0	0.0	고동진	전라남도 목포시 해동길3번길 3-4 (양동)	반송불능(때문부재)
35	대성동	162-3	대	162.0	171.2	9.2	기어진	전라남도 목포시 양율로 42, 105동 2103호(대성동,목포대성엘에이치천년나무아파트) (대성동, 목포대성엘에이치천년나무아파트)	반송불능(수취인불명)
	대성동	172-25	도로	36.0	0.0	-36.0			
36	대성동	164-7	대	3.0	3.0	0.0	김홍희	서울특별시 강남구 봉은사로71길 41, 102호 (삼성동)	반송불능(때문부재)
37	대성동	169-5	대	68.0	68.0	0.0	민관철	전라남도 목포시 마파지로 29 (대성동)	반송불능(때문부재)
38	대성동	169-17	대	264.0	238.4	-25.6	정호	전라남도 신안군 장산면 광포길 101-22	반송불능(때문부재)
39	대성동	169-20	대	54.0	54.0	0.0	문설희	전라남도 무안군 삼합읍 남악5로72번길 81-21, 202동 903호 (골드디움)	반송불능(때문부재)
40	대성동	172-3	대	171.0	171.0	0.0	전향신	전라남도 목포시 원산중앙로 109-1, 506동 402호 (연산동, 연산주공5단지아파트)	반송불능(때문부재)
41	대성동	172-8	대	132.0	120.7	-11.3	김미선	경상북도 구미시 인동45길 7, 103동 1504호 (구평동, 1단지부영아파트)	반송불능(기타)
42	대성동	172-10	대	126.0	126.0	0.0	권두홍	전라남도 목포시 이웃길 2 (대성동)	반송불능(때문부재)
43	대성동	172-13	도로	91.0	91.0	0.0	강태봉	전라남도 목포시 상동로 43, 203동 1107호	반송불능(때문부재)
44	대성동	172-20	대	75.0	75.0	0.0	김옥태	전라남도 목포시 노적봉길 37, 202호 (측후동, 종원스카이빌라)	반송불능(때문부재)
45	대성동	172-23	대	156.0	104.1	-51.9	박영숙	전라남도 목포시 이웃길 4 (대성동)	반송불능(때문부재)
46	대성동	175-16	대	165.0	165.0	0.0	문미정	전라남도 영암군 도포면 송의길 54-17	반송불능(때문부재)
47	대성동	175-18	대	136.0	131.2	0.0	이순례	전라남도 목포시 마파지로37번길 17-1 (대성동)	반송불능(때문부재)
		175-28	대		4.8				
48	대성동	175-20	도로	26.0	0.0	-26.0	김상문	전라남도 목포시 수문로 67-2 (남교동)	반송불능(때문부재)
49	대성동	184-49	도로	10.0	10.0	0.0	윤성현	전라남도 목포시 영산로 212 (산정동)	반송불능(주소불명)
	대성동	184-50	도로	4.0	4.0	0.0			
50	대성동	184-52	도로	6.0	0.0	-6.0	김신희	서울특별시 동작구 남부순환로271가길 6 (사당동)	반송불능(주소불명)
51	대성동	185	대	10.0	0.4	-9.6	임지영	광주광역시 남구 군분로129번길 5-9 (월산동)	반송불능(때문부재)
52	대성동	186	대	160.0	200.0	40.0	곽한매	전라남도 목포시 마파지로 42-6 (대성동)	반송불능(때문부재)
53	대성동	186-8	대	112.0	106.7	-5.3	이만진	전라남도 목포시 마파지로 42-3 (대성동)	반송불능(때문부재)
54	대성동	186-10	대	69.0	81.3	12.3	김광희	인천광역시 부평구 경인로884번길 23, 203호 (부평동, 중앙맨션)	반송불능(때문부재)
55	대성동	188	대	138.0	150.5	12.5	박진희	전라남도 목포시 양율로68번길 22 (대성동)	반송불능(때문부재)
56	대성동	189-12	대	55.0	68.4	13.4	최휘덕	전라남도 목포시 통일대로75번길 14, 302동 404호 (옥암동, 부영아파트)	반송불능(때문부재)
57	대성동	190	대	2007.0	1784.4	-222.6	유한회사뉴파워상사	전라남도 목포시 죽산로19번길 7-2 (산정동)	반송불능(이사불명)
58	대성동	193-6	대	56.0	56.0	0.0	최용복	전라남도 목포시 양율로 115 (산정동)	반송불능(수취인불명)
59	대성동	193-9	대	169.0	198.4	29.4	박지선	서울특별시 강동구 성안로31길 53, 302호 (천호동)	반송불능(때문부재)
60	대성동	193-10	대	175.0	204.6	29.6	김순란	전라남도 목포시 마파지로 44-5 (대성동)	반송불능(때문부재)
61	대성동	193-13	대	182.0	176.2	-5.8	김순임	전라남도 목포시 노송길38번길 2 (산정동)	반송불능(수취인불명)
62	대성동	193-14	대	132.0	145.8	13.8	황미애	전라남도 목포시 삼향천로91번길 21, 203동 704호 (옥암동, 하당2차현대아파트)	반송불능(때문부재)
63	대성동	193-16	대	122.0	128.2	6.2	정순을	전라남도 목포시 양율로41번길 40, 8동 707호 (산정동, 중앙하이츠)	반송불능(때문부재)
64	대성동	193-20	대	138.0	168.6	30.6	박승화	전라남도 목포시 상동로 64, 404동 605호 (상동, 상동3,4단지아파트)	반송불능(때문부재)
65	대성동	193-22	대	152.0	87.8	-64.2	이윤연	경기도 남양주시 경춘로1308번길 8-12, 107동 1407호 (평내동, 대명아파트)	반송불능(때문부재)
66	대성동	193-24	대	99.0	99.7	0.7	오재덕	전라남도 목포시 산정로 298, 103동 503호 (연산동, 현대아파트)	반송불능(때문부재)
67	대성동	193-32	대	109.0	70.6	-38.4	문차량	전라남도 목포시 옥암로186번길 20-1, 101동 907호 (석현동, 대송베스트빌)	반송불능(수취인불명)
68	대성동	193-33	도로	21.0	21.0	0.0	이정주	경기도 수원시 권선구 일월천로16번길 39, 105동 1504호	반송불능(수취인불명)
69	대성동	194-6	대	88.0	88.0	0.0	윤희	광주광역시 서구 화운로 203, 2동 402호 (화정동, 영화아파트)	반송불능(때문부재)
70	대성동	195-1	대	76.0	141.5	65.5	신은지	전라남도 목포시 마파지로 52 (대성동)	반송불능(때문부재)
71	대성동	195-3	대	96.0	96.0	0.0	천준영	전라남도 목포시 양율로 42, 109동 504호	반송불능(때문부재)
72	산정동	74-65	대	74.0	74.0	0.0	오영환	경기도 수원시 팔달구 행궁로26번길 31-12	반송불능(수취인불명)
73	대성동	28-73	대	40.0	60.9	20.9	윤남월례	전라남도 목포시 노송길17번길 9 (산정동)	반송불능(때문부재)
	산정동	88-3	대	116.0	99.6	-16.4			
74	산정동	88-4	대	126.0	135.3	9.3	우금성	전라남도 목포시 노송길17번길 7 (산정동)	반송불능(때문부재)
75	대성동	28-53	대	96.0	132.1	36.1	박종순	전라남도 목포시 노송길11번길 7-2 (대성동)	반송불능(때문부재)
	산정동	88-6	대	36.0	28.4	-11.2			
76	대성동	20-5	대	40.0	56.8	16.8	임옥순	전라남도 목포시 고하대로 641-11, 301동 1401호 (산정동, 신안비치3차아파트)	반송불능(때문부재)
77	대성동	20-5	대	40.0	56.8	16.8	이공심	전라남도 목포시 청호로 206, 104동 1205호	반송불능(때문부재)
78	대성동	20-5	대	40.0	56.8	16.8	임복주	전라남도 목포시 열린길11번길 4-4 (죽교동)	반송불능(때문부재)

79	대성동	22-8	대	188.0	176.9	-11.1	조기연	전라남도 목포시 평화로 2, 1108호 (상동)	반송불능(폐문부재)
80	대성동	22-10	대	112.0	112.0	0.0	오명희	전라남도 목포시 노송길7번길 18 (대성동)	반송불능(폐문부재)
81	대성동	22-16	대	129.0	129.0	0.0	김기태	전라남도 목포시 상동로 43, 202동 503호 (상동, 상동2단지아파트)	반송불능(폐문부재)
82	대성동	22-20	대	130.0	130.0	0.0	김미라	경기도 용인시 처인구 양지면 남평로26번길 15-7, 비동 502호 (ABC하우스)	반송불능(폐문부재)
83	대성동	22-20	대	130.0	130.0	0.0	김종현	전라남도 목포시 남악1로16번길 10, 102동 1504호 (옥암동, 목포옥암골드클래스아파트)	반송불능(폐문부재)
84	대성동	22-20	대	130.0	130.0	0.0	노덕균	전라남도 목포시 교육로 107, 801호 (상동, 21세기오피스텔)	반송불능(폐문부재)
85	대성동	22-20	대	130.0	130.0	0.0	김래아	전라남도 순천시 해룡면 대석길 98, 204동 1301호 (청솔아파트)	반송불능(폐문부재)
86	대성동	22-20	대	130.0	130.0	0.0	김동일	서울특별시 금천구 탑골로2길 15, 202호 (시흥동)	반송불능(폐문부재)
87	대성동	27-15	대	60.0	63.0	3.0	이세호	전라남도 목포시 마파지로 16-2 (대성동)	반송불능(폐문부재)
88	대성동	28-4	대	143.0	134.5	-8.5	노기홍	전라남도 목포시 마파지로 14-2 (대성동)	반송불능(폐문부재)
89	대성동	28-9	대	86.0	82.8	-3.2	이영주	부산광역시 기장군 일광읍 해송1로 33, 205동 402호 (일광신도시비스타동원2차)	반송불능(폐문부재)
	산정동	74-198	대	126.0	126.0	0.0			
	산정동	74-199	대	126.0	126.0	0.0			
	대성동	37-2	대	163.0	152.9	0.0			
		37-9	대		10.1				
90	대성동	28-33	대	71.0	34.0	-37.0	한양호	대전광역시 서구 둔산로 15, 117동 1303호 (둔산동, 향촌아파트)	반송불능(주소불명)
	대성동	28-92	대	32.0	13.1	-18.9			
91	대성동	28-55	대	165.0	165.0	0.0	김미현	전라남도 영암군 삼호읍 녹색로 1015-9, 103동 801호 (길촌빌라트)	반송불능(폐문부재)
92	대성동	28-56	대	109.0	113.2	4.2	임옥란	전라남도 목포시 원산중앙로 87, 308동 502호 (연산동, 연산주공3단지4단지아파트)	반송불능(폐문부재)
93	대성동	28-72	대	66.0	93.0	27.0	김경준	전라남도 목포시 노송길7번길 12-1 (대성동)	반송불능(폐문부재)
94	대성동	28-76	대	74.0	51.0	-22.9	김정여	전라남도 목포시 하당로213번길 5-2	반송불능(폐문부재)
95	대성동	30-9	대	28.0	38.1	10.1	해광진	경기도 성남시 수정구 수정남로328번길 3-1, 401호	반송불능(폐문부재)
	대성동	33-4	대	69.0	69.0	0.0			
96	대성동	31-2	대	71.0	71.0	0.0	윤종구	전라남도 목포시 노송길 9 (대성동)	반송불능(폐문부재)
	대성동	31-3	대	40.0	47.4	7.4			
97	대성동	31-4	대	83.0	83.0	0.0	김옥순	전라남도 목포시 노송길 9-1 (대성동)	반송불능(폐문부재)
	대성동	31-5	대	19.0	19.0	0.0			
	대성동	31-6	대	68.0	82.9	14.9			
	대성동	31-7	대	126.0	133.1	7.1			
	대성동	31-10	대	42.0	34.3	-7.7			
98	대성동	31-9	대	125.0	128.7	3.7	허영남	전라남도 목포시 노송길 11 (대성동)	반송불능(폐문부재)
99	대성동	31-11	대	106.0	89.2	-16.8	장승룡	전라남도 목포시 해안로237번길 26-1 (복만동)	반송불능(폐문부재)
100	대성동	32-7	대	2.0	2.0	0.0	이영길	광주광역시 북구 비엔날레로 17-4 (운암동)	반송불능(폐문부재)
101	대성동	34-1	대	100.0	97.0	0.0	정승연	전라남도 목포시 양율로 179, 204호 (용당동)	반송불능(폐문부재)
	대성동	34-13	대		3.0				
102	대성동	34-2	대	295.0	265.2	-29.8	김영채	전라남도 목포시 삼향천로 35, 105동 805호 (옥암동, 부영아파트)	반송불능(폐문부재)
103	산정동	59-5	대	53.0	64.5	11.5	김철용	전라남도 목포시 노송길38번길 11-4 (산정동)	반송불능(폐문부재)
104	산정동	59-9	대	3.0	3.0	0.0	김해남	경상남도 김해시 평전로 211, 홍익아파트 109-612 (내동, 홍익아파트)	반송불능(폐문부재)
	산정동	61-2	대	36.0	49.3	13.3			
105	산정동	61-3	대	46.0	46.0	0.0	오만석	전라남도 목포시 영산로 326 (용당동)	반송불능(수취인불명)
106	산정동	61-7	대	50.0	39.7	-10.3	조종문	대전광역시 유성구 진잠로150번길 16, 301호	반송불능(폐문부재)
107	산정동	61-8	대	79.0	95.1	16.1	서형욱	전라남도 목포시 산대로 55-2 (산정동)	반송불능(폐문부재)
108	산정동	62-4	대	73.0	68.9	-4.1	주태근	전라남도 목포시 영산로 719-29, 105동 305호 (석현동, 목포석현서희스타힐스)	반송불능(폐문부재)
109	산정동	72-10	대	234.0	234.0	0.0	이영희	전라남도 나주시 봉황면 용두길 181-10 (송원란농원)	반송불능(폐문부재)
110	산정동	73-13	대	106.0	90.5	-15.5	정종남	경기도 안성시 공도읍 진사길 27, 106동 403호 (안성공도우림아파트)	반송불능(폐문부재)
111	산정동	74-87	대	20.0	224.0	21.0	서형수	전라남도 목포시 호정로31번길 11 (산정동)	반송불능(폐문부재)
	산정동	74-154	대	96.0	103.3	7.3			
112	산정동	74-109	대	387.0	381.1	-5.9	강기문	전라남도 무안군 일로읍 오남로 43, 101동 1303호 (한국아텔리움아파트)	반송불능(폐문부재)
113	산정동	74-119	대	189.0	191.3	2.3	김승형	전라남도 목포시 호정로37번길 5-1	반송불능(폐문부재)
114	산정동	74-134	대	227.0	224.8	17.8	이성재	전라남도 목포시 산대로 67 (산정동)	반송불능(폐문부재)
115	산정동	74-137	대	127.0	152.4	25.4	김문	경기도 고양시 일산동구 노루목로 99, 502동 402호	반송불능(폐문부재)
116	산정동	74-140	대	205.0	191.6	-13.4	김정선	전라남도 목포시 죽선로 39, 에이동,304호(죽교동,근우아트빌)	반송불능(이사불명)

117	산정동	74-141	대	200.0	223.2	23.2	하상심	전라남도 목포시 노송길 42 (산정동)	반송불능(폐문부재)
118	산정동	74-146	대	146.0	150.8	4.8	박준영	전라남도 목포시 신흥로 13, 102동 1307호 (상동, 우성아파트)	반송불능(폐문부재)
119	산정동	74-147	대	320.0	313.3	-6.7	김효정	전라남도 영암군 삼호읍 대불주거8로 55, 102동 401호 (영암대불렉시아아파트)	반송불능(폐문부재)
120	산정동	74-151	대	36.0	36.0	0.0	천만석	전라남도 목포시 노송길17번길 16-2 (대성동)	반송불능(주소불명)
121	산정동	74-156	대	109.0	112.0	3.0	조재순	전라남도 목포시 북항로 101, 나동 101호 (죽교동, 연립주택)	반송불능(폐문부재)
122	산정동	74-165	대	13.0	13.0	0.0	강상원	충청북도 음성군 금왕읍 대금로 1557-13, 102동 1005호	반송불능(폐문부재)
123	산정동	74-176	대	7.0	7.0	0.0	김수길	전라남도 목포시 노송길 16 (산정동)	반송불능(폐문부재)
124	산정동	78-2	대	172.0	141.0	-31.0	최진	전라남도 목포시 양을로 267, 209동 108호 (용해동, 용해2단지아파트)	반송불능(폐문부재)
125	산정동	78-6	대	106.0	114.7	8.7	정명희	경기도 광명시 하안로 172, 102동 1201호 (소하동, 광명삼익아파트)	반송불능(폐문부재)
126	산정동	78-8	대	149.0	128.8	-20.2	최정영	전라남도 목포시 호정로 15-3 (산정동)	반송불능(폐문부재)
127	산정동	78-15	대	41.0	44.5	3.5	정일성	전라남도 목포시 호정로 15 (산정동)	반송불능(폐문부재)
128	산정동	78-24	대	69.0	56.7	-12.3	방성일	전라남도 목포시 호정로9번길 8-2 (산정동)	반송불능(폐문부재)
129	산정동	78-27	대	72.0	73.0	1.0	정귀남	전라남도 목포시 호정로13번길 5 (산정동)	반송불능(폐문부재)
	산정동	78-65	대	1.0	0.0	-1.0			
130	산정동	78-32	대	185.0	158.4	-26.6	장다함	전라남도 목포시 호정로13번길 8 (산정동)	반송불능(폐문부재)
131	산정동	78-37	대	53.0	58.8	5.8	범복례	전라남도 무안군 일로읍 오룡변영1로 10, 103동 1405호 (오룡 푸르지오 파르세나)	반송불능(주소불명)
	산정동	47-2	대	199.0	85.0	43.8			
	산정동	47-4	대		96.9				
	산정동	47-5	대		26.6				
	산정동	47-6	대		34.3				
132	산정동	78-39	대	116.0	103.4	-12.6	주순중	전라남도 목포시 호정로9번길 4-2 (산정동)	반송불능(폐문부재)
133	산정동	78-42	대	64.0	83.7	19.7	장수경	전라남도 목포시 연산백련로7번길 2-15, 301호 (연산동)	반송불능(폐문부재)
	산정동	78-77	대	132.0	130.8	-1.2			
134	산정동	78-45	대	98.0	98.0	0.0	한수정	전라남도 목포시 호정로 11 (산정동)	반송불능(폐문부재)
135	산정동	78-56	대	18.0	75.1	57.1	박순옥	광주광역시 북구 우치로 184-7 (오치동)	반송불능(폐문부재)
136	산정동	78-61	대	44.0	44.0	0.0	권동남	전라남도 목포시 양을로57번길 15, 다동 302호 (산정동, 보광빌라)	반송불능(폐문부재)
137	산정동	80-1	대	132.0	132.0	0.0	박병술	전라남도 목포시 호정로 9-2 (산정동)	반송불능(폐문부재)
	산정동	80-5	도로	53.0	53.0	0.0			
	대성동	49	대	152.0	152.0	0.0			
	대성동	49-1	대	23.0	23.0	0.0			
	대성동	49-2	대	69.0	69.0	0.0			
	대성동	49-3	대	20.0	20.0	0.0			
138	산정동	80-1	대	132.0	132.0	0.0	선종남	전라남도 목포시 수강로12번길 29 (보광동3가)	반송불능(수취인불명)
	산정동	80-5	도로	53.0	53.0	0.0			
	대성동	49	대	152.0	152.0	0.0			
	대성동	49-1	대	23.0	23.0	0.0			
	대성동	49-2	대	69.0	69.0	0.0			
	대성동	49-3	대	20.0	20.0	0.0			
139	산정동	80-1	대	132.0	132.0	0.0	박삼룡	전라남도 목포시 호정로 9-2 (산정동)	반송불능(폐문부재)
	산정동	80-5	도로	53.0	53.0	0.0			
	대성동	49	대	152.0	152.0	0.0			
	대성동	49-1	대	23.0	23.0	0.0			
	대성동	49-2	대	69.0	69.0	0.0			
	대성동	49-3	대	20.0	20.0	0.0			
140	산정동	80-2	대	119.0	119.0	0.0	김성연	전라남도 목포시 호정로9번길 4-3 (산정동)	반송불능(폐문부재)
	산정동	80-7	대	15.0	15.0	0.0			
141	산정동	81-8	대	53.0	53.0	0.0	김동열	전라남도 무안군 운남면 운해로 560	반송불능(이사불명)
142	산정동	82-1	대	112.0	112.0	0.0	이복주	전라남도 목포시 호정로9번길 8-4 (대성동)	반송불능(폐문부재)
143	산정동	82-3	대	56.0	56.0	0.0	이월순	전라남도 목포시 독섬길 5-1 (산정동)	반송불능(폐문부재)
	산정동	83-4	도로	117.0	72.4	-44.6			
	산정동	83-5	대	103.0	103.0	0.0			
	산정동	83-6	대	94.0	94.0	0.0			
	대성동	47-1	대	106.0	253.1	147.1			

144	산정동	83-3	대	70.0	93.7	23.7	박쌍임	전라남도 목포시 호정로9번길 10-1 (산정동)	반송불능(폐문부재)
	산정동	83-5	대	103.0	103.0	0.0			
	산정동	83-6	대	94.0	94.0	0.0			
145	산정동	86-19	대	129.0	11.2	-17.8	윤성일	전라남도 목포시 호정로13번길 14 (산정동)	반송불능(폐문부재)
146	산정동	86-25	대	69.0	64.5	-4.5	류주아	전라남도 목포시 호정로13번길 14-4 (산정동)	반송불능(폐문부재)
147	산정동	86-26	대	89.0	81.1	-7.9	양외순	전라남도 목포시 호정로13번길 12-2 (산정동)	반송불능(폐문부재)
148	산정동	86-29	대	33.0	33.0	0.0	김선모	경기도 시흥시 매화로135번길 25-2, G동 103호 (도창동, 로즈빌)	반송불능(폐문부재)
149	산정동	86-32	대	63.0	73.6	10.6	서조인	전라남도 목포시 호정로13번길 12-1 (산정동)	반송불능(폐문부재)
150	산정동	86-36	대	288.0	288.0	0.0	임민숙	전라남도 목포시 원산중앙로 108, 203동 1105호 (연산동, 연산주공1단지2단지아파트)	반송불능(폐문부재)
151	대성동	37-1	대	99.0	99.0	0.0	정현종	전라남도 목포시 노송길7번길 18 (대성동)	반송불능(폐문부재)
152	대성동	43-3	대	33.0	33.0	0.0	박경일	전라남도 목포시 상동로 64, 305동 407호 (상동, 상동3,4단지아파트)	반송불능(수취인불명)
153	대성동	43-14	대	112.0	112.0	0.0	김수자	전라남도 목포시 원산중앙로 87, 402동 303호 (연산동, 연산주공3단지4단지아파트)	반송불능(폐문부재)
154	대성동	43-15	대	69.0	69.0	0.0	조재철	전라남도 장흥군 안양면 동계길 3	반송불능(폐문부재)
155	대성동	43-18	대	182.0	157.3	-24.7	이연자	서울특별시 강서구 초록마을로11길 7 (화곡동)	반송불능(주소불명)
156	대성동	43-20	대	181.0	162.7	-18.3	박인숙	전라남도 목포시 노송길6번길 7 (대성동)	반송불능(폐문부재)
157	대성동	47-1	대	106.0	253.1	147.1	조경담	전라남도 목포시 호정로9번길 8-3 (산정동)	반송불능(폐문부재)
158	대성동	47-2	대	199.0	85.0	43.8	박현태	전라남도 목포시 남악1로52번길 35-8, 201동 2005호 (옥암동, 목포옥암2휴먼시아)	반송불능(폐문부재)
	대성동	47-4	대		96.9				
	대성동	47-5	대		26.6				
	대성동	47-6	대		34.3				
159	대성동	63-7	대	187.0	204.4	17.4	임재훈	전라남도 무안군 일로읍 오룡번영로 131, 106동 1102호 (호반써밋남악오룡1차)	반송불능(폐문부재)

대산 1 ~ 3 지구 경계결정 통지 공시송달 조서

번호	토지소재지			면적(㎡)			이해관계인		반송사유
	법정동	지번	지목	종전	경계결정	증·감	성명	주소	
1	대성동	172-18	대	165.0	143.8	-21.2	조성철	광주광역시 광산구 첨단중앙로 201, 105동 506호 (월계동, 첨단동부아파트)	반송불능(폐문부재)
2	대성동	172-23	대	156.0	104.1	-51.9	목포지구원예농업협동조합	전라남도 목포시 청호로 22 (대성동)	반송불능(이사불명)
3	대성동	163	대	191.0	198.0	7.0	축산업협동조합중앙회	서울특별시 강동구 올림픽로 528 (성내동, 농협서울지역본부)	반송불능(수취인불명)
4	대성동	194-3	대	160.0	163.7	3.7	신인자	전라남도 목포시 마파지로 44 (대성동)	반송불능(폐문부재)
5	산정동	88-4	대	126.0	135.3	9.3	문성희	전라남도 목포시 영산로 719-32, 107동 1304호 (석현동, 목포한양립스더포레)	반송불능(폐문부재)
6	산정동	1008-1	잡	134.0	109.0	-26.0	근해유양수산업협동조합	전라남도 여수시 충무로 38-8 (교동)	반송불능(이사불명)
7	대성동	184-49	도로	10.0	10.0	0.0	동문교회신용협동조합	전라남도 목포시 소영길 27-7 (용당동)	반송불능(폐문부재)
	대성동	184-50	도로	4.0	4.0	0.0			
8	대성동	20-5	대	40.0	56.8	16.8	주식회사채권추심전문엘씨대부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국회대로70길 23 (여의도동, 용산빌딩)	반송불능(수취인불명)
9	대성동	32-8	대	13.0	13.0	0.0	이화순	전라남도 목포시 노송길11번길 4-1 (산정동)	반송불능(폐문부재)
10	산정동	59-12	대	86.0	95.3	9.3	조순임	서울특별시 서초구 샘마루길 11 (내곡동, 대청마루)	반송불능(수취인불명)
	산정동	74-103	대	139.0	139.0	0.0			
11	산정동	61-8	대	79.0	95.1	16.1	서대연	전라남도 목포시 산대로 55-2 (산정동)	반송불능(폐문부재)
12	산정동	61-12	대	69.0	69.0	0.0	주식회사홍익상호신용금고	전라남도 목포시 산정로 148 (산정동)	반송불능(폐문부재)
	산정동	73-4	대	165.0	165.0	0.0			
	산정동	73-14	대	165.0	165.0	0.0			
13	산정동	170-26	대	46.0	0.0	-46.0	이춘달	전라남도 목포시 산대로 86-4 (산정동)	반송불능(폐문부재)
14	산정동	62-4	대	73.0	68.9	-4.1	박미성	전라남도 목포시 산양로 50, 305동 409호 (대양동, 근화희망타운3차아파트)	반송불능(폐문부재)
15	산정동	74-110	대	149.0	159.1	10.1	주식회사보해상호신용금고	전라남도 목포시 영산로87번길 5-1 (명륜동)	반송불능(폐문부재)
16	대성동	184-49	도로	10.0	10.0	0.0	정기영	전라남도 목포시 용당로196번길 20-5 (용당동)	반송불능(폐문부재)
	대성동	184-50	도로	4.0	4.0	0.0			
17	산정동	74-193	대	63.0	52.0	-11.0	대우캐피탈주식회사	대전광역시 대덕구 동서대로177번길 2 (송촌동, 대전웰니스병원)	반송불능(수취인불명)
18	산정동	74-218	대	60.0	73.7	13.7	목포우리신용협동조합	전라남도 목포시 마파지로 33 (대성동)	반송불능(폐문부재)
19	산정동	74-177	대	101.0	125.4	24.4	양금자	전라남도 목포시 용당국민로13번길 2-1, 국민주택 27호 (용당동)	반송불능(수취인불명)
20	대성동	184-49	도로	10.0	10.0	0.0	장왕기	전라남도 목포시 축산로40번길 24, 103동104호 (산정동, 현대아파트)	반송불능(수취인불명)
	대성동	184-50	도로	4.0	4.0	0.0			
21	산정동	82-1	대	112.0	112.0	0.0	목포원예농업협동조합	전라남도 목포시 청호로 22 (대성동)	반송불능(이사불명)
22	산정동	83-3	대	70.0	93.7	23.7	김원영	전라남도 목포시 남악1로 15, 102-1103 (옥암동, 목포한국아델리움)	반송불능(폐문부재)
	산정동	83-5	대	103.0	103.0	0.0			
	산정동	83-6	대	94.0	94.0				
23	산정동	86-2	대	255.0	213.1	-41.9	최민례	전라남도 목포시 양을로41번길 40, 8동 1301호 (산정동, 중앙하이츠)	반송불능(폐문부재)
24	산정동	86-4	대	96.0	80.5	-15.5	상록수제일자동차유동화전문유한회사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국회대로66길 9 (여의도동)	반송불능(수취인불명)
25	산정동	86-33	대	60.0	72.5	12.5	정봉균	전라남도 목포시 삼학로 363, 113동408호 (용해동, 신안인스빌아파트)	주소불명
26	대성동	47-2	대	199	85	43.8	기술신용보증기금	부산광역시 중구 대청로155번길 6 (중앙동47)	반송불능(이사불명)
	대성동	47-4	대		96.9				
	대성동	47-5	대		26.6				
	대성동	47-6	대		34.3				
27	대성동	184-49	도로	10.0	10.0	0.0	장용기	전라남도 목포시 송림로 8, 비동205호 (용당동, 한일상가아파트)	반송불능(수취인불명)
	대성동	184-50	도로	4.0	4.0	0.0			
28	대성동	47-2	대	199	85	43.8	신용보증기금	서울특별시 마포구 마포대로 122 (공덕동, 신용보증기금빌딩)	반송불능(수취인불명)
	대성동	47-4	대		96.9				
	대성동	47-5	대		26.6				
	대성동	47-6	대		34.3				

[붙임 2] 경계결정 이의신청서

■ 지적재조사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별지 제5호서식] <개정 2017. 10. 19.>

경계결정 이의신청서

접수번호	접수일	처리일	처리기간	51일
------	-----	-----	------	-----

신청인	성명 (기관·단체명)	생년월일 (등록번호)
	주소	전화번호

토지의 표시	읍·면	동·리	지번	지목	면적(㎡)		
					종전	확정예정	증감

이의신청 사유

「지적재조사에 관한 특별법」 제17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9조에 따라 20 . . . 경계결정에 대하여 이의신청합니다.

년 월 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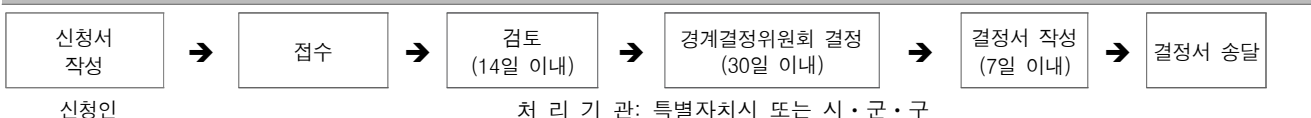
신청인

(서명 또는 인)

목포시장 귀하

첨부서류	이의신청 사유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수수료 없음
------	----------------------	-----------

처리절차



신청인

처 리 기 관: 특별자치시 또는 시·군·구

210mm×297mm[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목포시 의료·요양 등 지역 돌봄의 통합지원에 관한 조례」 제정(안) 입법예고

「목포시 의료·요양 등 지역 돌봄의 통합지원에 관한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널리 알려 이에 대한 시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2025. 9. 22.

목 포 시 장

1. 조 례 명 : 「목포시 의료·요양 등 지역 돌봄의 통합지원에 관한 조례」

2. 제정이유

- 노쇠, 장애, 질병, 사고 등으로 일상생활 수행에 어려움을 겪는 사람이 살던 곳에서 계속하여 건강한 생활을 영위
- 의료·요양 등 돌봄 서비스를 통합적으로 연계·제공하기 위한 제도적 근거 규정을 마련

3. 주요내용

- 목적 및 용어 정의(안 제1조 ~ 제2조)
 - 조례 목적과 주요 용어의 정의를 규정
- 책무 및 지역계획 수립(안 제3조 ~ 제4조)
 - 시장의 책무 명시, 지역 통합돌봄 계획 수립의 근거를 규정
- 통합지원 서비스 및 절차(안 제5조 ~ 제8조)
 - 통합지원 사업 추진, 개인별 지원계획 수립, 통합지원 제공 및 통합지원회의 운영에 관한 사항 규정

○ 통합지원 기반 조성(안 제9조 ~ 제10조)

- 통합지원 창구 및 전담조직 설치 등 기반 조성에 관한 사항 규정

○ 통합지원 협의체(안 제11조 ~ 제13조)

- 민관협의체 구성, 기능 및 운영에 관한 사항 규정

○ 기타사항(제14조 ~ 제18조)

- 사무의 위탁, 교육 및 홍보, 협력체계 구축, 개인정보 등의 보호 등에 관한 사항 규정

4. 제정조례안 : <붙임 1>

5. 관계법령 : 「의료·요양 등 지역 돌봄의 통합지원에 관한 법률(약칭:돌봄통합지원법)」

6. 사전협의(승인) 사항 : 감사실, 기획예산과, 여성가족과

7. 관련부서 의견

- 부패영향평가(감사실) : 원안동의
- 예산사항(기획예산과) : 예산반영
- 규제심사(기획예산과) : 해당없음
- 성별영향평가(여성가족과) : 개선의견 일부반영

8. 입법예고 기간 : 2025. 9. 22. ~ 2025. 10. 13.(21일간)

9. 의견제출

이 조례의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2025년 10월 13일 18:00까지 목포시장(노인장애인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의견 제출사항

-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 및 그 사유)
- 성명(기관·단체의 경우에는 법인·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 그 밖에 필요한 사항 등

나. 제출방법 : 우편, FAX, 이메일, 직접 방문

다. 의견제출 및 문의처 : 목포시청 노인장애인과(통합돌봄팀)

○ 주 소 : (우 58724) 전남 목포시 양율로 203, 노인장애인과

○ 전 화 : 061-270-3354, 팩스 : 061-270-3582

○ 이 메 일 : dkdlel6541@korea.kr

10. 기타사항

○ 기타 자세한 사항은 목포시청 홈페이지 (<http://www.mokpo.go.kr>) 입법예고란을 참고하거나 목포시청 노인장애인과(☎061-270-3353)로 문의 바랍니다.

입법예고 의견제출서

□ 조 례 명 : 「목포시 의료·요양 등 지역 돌봄의 통합지원에 관한 조례」

○ 성명(단체명) :

○ 주 소 :

○ 전 화 번 호 :

조례(안) 항목별 내용	찬성여부		의견(사유)	기타 참고사항
	찬성	반대		

목포시 의료·요양 등 지역 돌봄의 통합지원에 관한 조례 제정(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노쇠, 장애, 질병, 사고 등으로 일상생활 수행에 어려움을 겪는 사람이 살던 곳에서 계속하여 건강한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보건의료·요양 등 돌봄 지원을 통합·연계하여 제공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목포시 주민의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통합지원”이란 통합지원 대상자가 우리 지역에서 계속하여, 건강하게 살아가기 위해 필요로 하는 보건의료, 건강관리, 장기요양, 일상생활돌봄, 주거 등의 각종 서비스와 지원을 직접 또는 연계하여 통합적으로 제공하는 것을 말한다.
2. “통합지원 관련기관”이란 통합지원 대상자에게 통합지원 서비스를 제공하는 개인·법인·기관·단체 등을 말한다.
3. “통합지원 대상자”란 목포시에 주소를 두고 거주하는 사람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한다.
 - 가. 65세 이상의 사람 중 통합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된 사람
 - 나. 장애인복지법 제32조제1항에 따라 장애인 등록이 되어 있는 사람 중 통합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된 사람
 - 다. 그 밖에 시장이 정한 기준에 따라 질병, 사고 등으로 인하여 스스로 생활이 어렵게 되어 통합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제3조(시장의 책무) ①시장은 통합지원을 효과적으로 제공하기 위한 제반 여건을 조성하고 지역의 실정에 적합한 정책을 수립·시행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②시장은 제1항의 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예산과 인력을 확보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지역계획 수립 및 시행) ① 시장은 통합지원 제공을 위하여 법 제6조에 따라 목포시 통합지원 지역계획을 매년 수립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지역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다.

1. 통합지원 전달체계의 조직·운영에 관한 사항
2. 통합지원 대상자의 발굴과 지원체계의 구축에 관한 사항
3. 통합지원 재원 조달과 운용에 관한 사항
4. 통합지원 제공 공공기반시설과 지원의 균형 있는 공급 방안
5. 통합지원 관련 부서와 통합지원 관련기관 간의 연계·협력 방안
6. 통합지원 관련 조례·제도의 개선에 관한 사항
7. 그 밖에 시장이 통합지원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지역계획 수립시 「사회보장기본법」 제19조의 사회보장에 관한 지역계획 및 「사회보장급여법」의 지역사회보장계획, 「지역보건법」 제7조의 지역보건의료계획과 연계하여야 한다.

④ 시장은 지역계획 수립·시행의 효과적 추진을 위해 매년 통합지원 사업에 대해 평가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다음 연도 지역계획에 반영할 수 있다.

⑤ 통합지원 대상자의 성별·연령·가구 형태별 현황 및 격차 분석에 관한 사항

⑥ 시장은 지역계획 수립·시행을 위해 필요한 때에는 관계기관·단체 등에 대하여 자료 제공 등의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협조 요청을 받은 관계 기관·단체 등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요청에 따라야 한다.

제5조(통합지원 사업 추진) ① 시장은 통합지원 정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관계법령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시행할 수 있다.

1. 방문 진료·간호·약물관리 등 보건의료 분야 지원사업
2. 노인성 질병, 만성질환, 장애, 정신질환 등 건강관리 및 예방 지원사업
3. 신체활동 또는 가사활동 지원 등 일상생활 돌봄 지원사업
4. 퇴원자·퇴소자에 대한 지역사회 복귀 및 보건의료·건강관리 지원사업
5. 통합지원 대상자의 가족 및 보호자에 대한 신체적·정신적 건강관리 지원사업
6. 케어안심주택 등 주거 제공 및 주거환경 개선 등 주거 지원사업

7. 정보통신기술(ICT)을 활용한 서비스, 보조기기 지원 등
 8. 기존의 돌봄 서비스로 충족되지 않는 돌봄 수요에 대한 서비스 개발 및 지원사업
 9. 자원봉사 등 지역 주민의 돌봄 통합지원의 참여를 위한 사업
 10.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 ② 시장은 예산의 범위에서 제1항 각 호의 사업 추진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이를 수행하는 통합지원 관련기관 등에 지원할 수 있다.

제6조(개인별 지원계획 수립) ① 시장은 통합지원 대상자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는 개인별 지원계획을 수립하고 이를 안내하여야 한다.

1. 통합지원의 내용, 방법, 수량, 제공 기간 및 제공 주체 등에 관한 사항
 2. 통합지원 서비스를 제공하는 기관·법인·단체·시설이 둘 이상인 경우 상호 간 연계 방법
 3.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② 전항의 경우 통합지원 대상자의 의료, 요양 및 일상생활지원 등 돌봄의 필요도를 조사 및 판정시 성별·연령·가구형태에 따른 특성을 고려하여 반영하여야 한다.
- ③ 개인별 지원계획을 수립하는 때에는 해당 당사자 및 가족에게 의견진술의 기회를 제공하여야 한다.

제7조(통합지원 제공 등) ① 시장은 통합지원 대상자에 대하여 수립된 개인별지원 계획에 따라 제5조에 따른 각종 돌봄 서비스를 직접 제공하거나 통합지원 관련 기관에 의뢰하여 통합적으로 제공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② 제1항에 따라 의뢰를 받은 통합지원 관련기관은 서비스 제공 여부와 내용 등을 결정하고, 구청장에게 그 결정 및 변경사항을 통보하여야 한다.
- ③ 시장은 통합지원 제공 상황 및 통합지원 대상자의 상태변화를 정기적으로 점검 하여야 하며, 점검 결과에 따라 제공되는 통합지원 서비스를 통합지원 관련기관과 협의하여 조정할 수 있다.

제8조(통합지원회의) ① 시장은 통합지원 대상자에 다음 각호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통합지원 회의를 운영한다.

1. 통합지원 대상자의 보건의료, 영양 및 돌봄 필요도 등에 대한 전문기관의 조사·판정 결과를 바탕으로 한 종합판정
2. 종합판정에 따른 개인별지원계획 수립, 심의, 결정 및 변경
3. 그 밖에 통합지원 대상자에 대한 통합지원 제공과 관련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항

② 통합지원회의는 제10조에 따라 설치된 통합지원 전담조직의 업무 담당자, 제2조제2호에 따른 통합지원 관련기관, 법 제25조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이 지정한 전문기관의 목포시 지역 업무 담당자 및 시장이 지정한 건강, 주거, 돌봄 분야의 전문가 등으로 구성한다.

제9조(통합지원 창구 설치) 시장은 동 또는 보건소 등에 지역 주민들이 통합지원을 편리하게 상담하고 이용할 수 있도록 통합지원 창구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

제10조(전담조직의 설치) ① 지역 주민의 돌봄을 총괄하고 우리 지역 주민에 대한 돌봄을 통합적으로 지원하기 위해 필요한 제반 업무를 담당하기 위하여 목포시에 통합지원 업무 전담조직을 둔다.

② 통합지원 담당 조직은 법 제10조부터 제14조까지의 업무, 제21조의 업무 및 시장이 지역 주민에 대한 돌봄 통합지원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업무를 수행한다.

③ 전담조직의 조직과 사무분장에 관해서는 「목포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시행규칙」으로 정한다.

제11조(통합지원협의체) ① 시장은 통합지원 사업의 원활한 추진과 통합지원 관련기관 등과의 연계·협력을 강화하기 위해 통합지원협의체(이하 “협의체”라 한다)를 둔다.

② 협의체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자문한다.

1. 지역계획의 수립 및 평가에 관한 사항
2. 통합지원 시책 추진에 관한 사항
3. 통합지원 관련기관 등과의 연계·협력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12조(협의체의 구성 및 임기) ① 통합지원협의체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3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시장으로 하고, 부위원장은 위촉직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당연직 위원은 통합지원 업무 담당 국장, 보건소장, 국민건강보험공단 목포지사장, 국민연금공단 목포지사장으로 한다.

④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한다. 이 경우 특정성으로만 위원회를 구성할 수 없다.

1. 통합지원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2. 통합지원 관련기관의 대표자
3. 목포시 의회에서 추천하는 자
4. 그 밖에 시장이 통합지원 사업 추진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⑤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의 임기는 그 재직기간으로 한다.

⑥ 협의체의 사무 처리를 위하여 간사를 두며, 간사는 시장이 지정하는 공무원으로 한다.

제13조(협의체의 회의) ① 위원장은 협의체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협의체의 정기회의는 연 2회 소집하고, 임시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또는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이 요구하는 경우에 개최한다.

③ 협의체의 회의는 재적의원 과반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의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14조(사무의 위탁) ① 시장은 사업의 효율적인 관리 및 운영을 위하여 그 사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관련 업무를 수행하는 전문기관·법인·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사무를 위탁하는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③ 민간위탁에 관하여 이 조례에서 규정하지 않은 사항은 「목포시 사무의 민간 위탁 촉진 및 관리조례」를 준용한다.

제15조(교육 및 홍보) ① 시장은 목포시에서 추진하는 통합지원 정책에 대한 주민의 이해를 증진하고, 지역사회의 참여를 독려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와 같은 교육 및 홍보를 실시할 수 있다.

1. 주민 및 관련 기관의 참여를 위한 홍보 활동
2. 통합지원 사업 우수사례 발굴 및 확산 지원
3. 설명회, 워크숍 등 주민 참여 교육

4. 그 밖에 시장이 교육 또는 홍보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시장은 통합지원 제공에 대한 주민의 자원봉사활동 등을 장려하기 위한 조치를 할 수 있다.

③ 시장은 통합지원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예산의 범위 내에서 홍보 물품 및 비용 등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제16조(협력체계 구축) 시장은 통합지원 사업이 체계적·종합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중앙행정기관 및 다른 지방자치단체, 관련 기관·단체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제17조(포상) 시장은 돌봄의 통합지원 사업 추진에 기여한 공적이 현저한 개인·법인·단체 등에게 「목포시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제18조(개인정보 등의 보호) 통합돌봄 업무에 종사하거나 종사하였던 자는 「개인정보 보호법」 및 「사회보장기본법」 제38조제1항을 준수하여야 하며,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다른 사람에게 누설하거나 직무상 목적 외의 용도로 이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부 칙

이 조례는 2026년 3월 27일부터 시행한다.

입 법 예 고

「목포시 고향사랑 기부금 모금 및 운용에 관한 조례」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널리 알려 이에 대한 시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5. 9. 22.

목 포 시 장

1. 개정이유

- 고향사랑기부자 예우 확대를 위한 근거를 마련하기 위함

2. 주요내용

- 기부자 예우에 관한 사항(안 제25조 및 부칙 제2조)
 - 기부자 우대를 위한 기부증서 발급과 시에서 설치·운영하는 공공시설 이용 시 입장료 등의 감면에 관한 사항 신설

3. 조례개정안 : 붙임

4. 관계법령

- 「고향사랑 기부금에 관한 법률」

5. 관련부서 의견

- 부패영향평가(감사실) : 의견없음
- 성별영향평가(여성가족과) : 의견없음

6. 규제심사 대상 여부 검토 : 해당없음

7. 예산사항 : 해당없음

8. 입법예고 기간 : 2025. 9. 22. ~ 2025. 10. 13. (21일간)

9. 의견제출

이 조례의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2025년 10월 13일까지 목포시장(자치행정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의견 제출사항

-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 및 그 사유)
- 성명(기관·단체의 경우에는 법인·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 기타 참고사항

나. 의견제출처 : [우] 58613 전남 목포시 양을로 203(용당동)
목포시청 자치행정과 고향사랑팀

다. 제출방법 : 우편, FAX (061-270-3579), 직접 방문 등

10. 기타사항

- 기타 자세한 사항은 목포시청 홈페이지(<http://www.mokpo.go.kr>) 입법예고란을 참조하시거나 목포시청 자치행정과(☎ 061-270-1234)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목포시 고향사랑 기부금 모금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목포시 고향사랑 기부금 모금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5조 제목 외의 부분을 제1항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종전의 제목 외의 부분) 제6호를 제8호로 하며, 같은 조 제1항(종전의 제목 외의 부분)에 제6호 및 제1항(종전의 제목 외의 부분)에 제7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6. 기부자 예우를 위한 기부증서 발급

7. 목포시에서 설치·운영하는 공공시설 이용 시 입장료, 관람료 등의 감면

② 제1항에 따른 기부자 예우대상, 기부증서 발급 등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목포시 시티투어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2항에 제6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6. 「목포시 고향사랑 기부금 모금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제25조에 따른
기부증서를 소지한 자

② 목포문학관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에 제6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⑥ 「목포시 고향사랑 기부금 모금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제25조에 따른 기부증서를 소지한 자의 경우, 목포시민에 준하여 관람료를 감면할 수 있다.

③ 목포근대역사관 관리·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의2에 제4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④ 「목포시 고향사랑 기부금 모금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제25조에 따른 기부증서를 소지한 자의 경우, 목포시민에 준하여 관람료를 감면할 수 있다.

④ 목포시 유달산목재문화체험장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3조제2항제16호를 제17호로 하고, 같은 항에 제16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항 제17호(중전의 제16호) 중 “15호까지”를 “16호까지”로 한다.

16. 「목포시 고향사랑 기부금 모금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제25조에 따른 기부증서를 소지한 자

⑤ 목포자연사박물관 관리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의2에 제5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⑤ 「목포시 고향사랑 기부금 모금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제25조에 따른 기부증서를 소지한 자의 경우, 목포시민에 준하여 관람료를 감면할 수 있다.

⑥ 목포어린이바다과학관 관리·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의2에 제5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⑤ 「목포시 고향사랑 기부금 모금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제25조에 따른 기부증서를 소지한 자의 경우, 목포시민에 준하여 관람료를 감면할 수 있다.

신 · 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25조(기부자 예우) 시장은 기부 자에게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예우를 할 수 있다. 1. ~ 5. (생 략) <u><신 설></u> <u><신 설></u> 6. (생 략) <u><신 설></u>	제25조(기부자 예우) ① ----- ----- -----. 1. ~ 5. (현행과 같음) 6. <u>기부자 예우를 위한 기부증 서 발급</u> 7. <u>목포시에서 설치·운영하는 공공시설 이용 시 입장료, 관 람료 등의 감면</u> 8. (현행 제6호와 같음) ② <u>제1항에 따른 기부자 예우대 상, 기부증서 발급 등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한 다.</u>

관계 법령(발췌)

고향사랑 기부금에 관한 법률 (약칭: 고향사랑기부금법)

[시행 2025. 1. 1.] [법률 제20314호, 2024. 2. 20., 일부개정]

제1조(목적) 이 법은 고향사랑 기부금의 모금·접수와 고향사랑기금의 관리·운용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고향에 대한 건전한 기부문화를 조성하고 지역경제를 활성화함으로써 지역균형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3. 6. 9.>

제12조(제도의 홍보·연구 및 지원) ① 행정안전부장관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고향사랑 기부금 제도에 대한 홍보, 주기적인 조사·분석 및 연구 등을 통하여 기부가 활성화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24. 2. 20.>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서

☐ 조례명 : 목포시 고향사랑 기부금 모금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성명(단체명) : (서명 또는 인)

○ 주 소 :

○ 전 화 번 호 :

조례(안) 항목별 내용	찬성여부		의견(사유)	기타 참고사항
	찬성	반대		

「목포시 아이스팩 수거 및 재사용 등의 활성화 지원 조례」 폐지(안) 입법예고

「목포시 아이스팩 수거 및 재사용 등의 활성화 지원 조례」를 폐지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널리 알려 이에 대한 시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5. 9. 22.

목 포 시 장

1. 폐지 이유

- 사업대상인 고흡수성수지 아이스팩에 대한 폐기물부담금 부과정책으로 생산량이 급감하여 활성화 등 지원사업을 종료하고자 함

2. 주요 내용

- 아이스팩 수거 및 재사용 등의 활성화 기본원칙 (제3조)
- 시장 및 주민의 책무 (제4조, 제5조)
- 활성화 시책의 수립 등(제6조)
- 사업지원 등(제8조)

3. 폐지조례안 : 불임 1

4. 관계법령 : 해당없음

5. 관련부서 의견

- 부패영향평가 대상 여부(감사실) : 해당 없음
- 규제심사 대상 여부(기획예산과) : 해당 없음
- 성별영향분석평가 대상 여부(여성가족과) : 해당 없음

6. 예산사항 : 해당 없음

7. 입법예고 : 2025. 9. 22. ~ 2025. 10. 13. (21일간)

8. 사전협의(승인) 사항 : 해당 없음

9. 의견제출

- 이 조례의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2025년 10월 13일까지 목포시장(자원순환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의견 제출사항

-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 및 그 사유)
- 성명(기관·단체의 경우 법인·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 기타 참고사항

나. 의견제출처

- (58721) 전남 목포시 수문로 32(남교동) 목포시청 자원순환과

다. 제출방법 : 우편, 팩스(061-270-3583), 직접방문 등

10. 기타사항

- 기타 자세한 사항은 목포시청 홈페이지(<http://www.mokpo.go.kr>) 입법예고란을 참조하시거나 목포시청 자원순환과(☎061-270-3656)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1】

목포시 조례 제 호

목포시 아이스팩 수거 및 재사용 등 활성화 지원 조례
폐지(안)

목포시 아이스팩 수거 및 재사용 등 활성화 지원 조례를 폐지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서

□ 자치법규명 : 목포시 아이스팩 수거 및 재사용 등의 활성화 지원 조례

○ 성명(단체명) : (서명 또는 인)

○ 주 소 :

○ 전 화 번 호 :

조례(안) 항목별 내용	찬성여부		의견(사유)	기타 참고사항
	찬성	반대		